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95

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:이인선·박충권·김성원

최은석 · 강대식 · 성일종

강선영 • 조지연 • 임종득

이종욱 • 조경태 • 박성훈

김위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, 해외사업장 청산·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 사업장 신설·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, 그 밖에 '대통령령'으로 정하 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'시행 규칙'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제가 부합하 지 않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 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 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중 "대통령령"을 "산업통상자원부령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	제7조(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		
선정) ① (생 략)	선정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	②		
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			
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			
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		
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			
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			
게 신청하여야 한다.			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	
3. 그 밖에 <u>대통령령</u> 으로 정하	3 <u>산업통상자원부령</u>		
는 서류	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